2021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다.

지침의 내용은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하고 경제동향 및 금융시장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지침은 기금자산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 대해 적용되므로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 되고준수되어야 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을 제시하며, 기금투자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기금관리주체가 전반적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1.3 기금의 개요

본 기금은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농어업재생산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사업에 거대재해 발생으로 국가 재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이에 따른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의 3(기금의 설치)에 의거 2005년 5월부터 설치·운영되었다.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재해보험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통합함에 따라, 본 기금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라 2010년부터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변경되었다.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에 따른 재보험료수입, 정부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지출 등이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로는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정 등이 있다.

기금자산의 운용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동법시행령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위탁)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담당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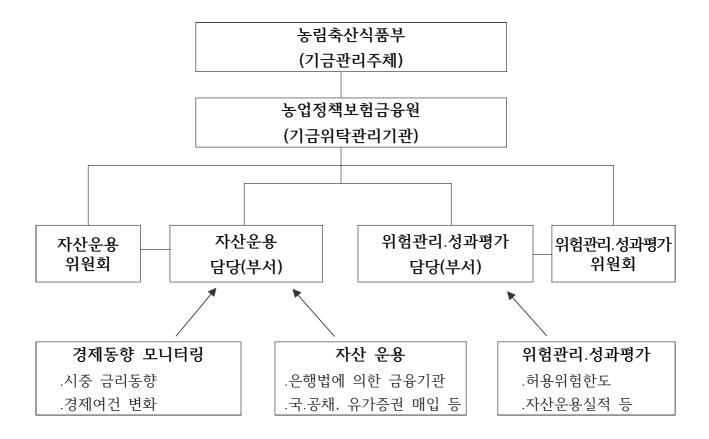
기금자산의 운용은 거대재해 발생으로 재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기본재산을 충실히 관리·운용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거대재해 발생 시 국가 재정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2 자산운용 원칙

- (1) 기금의 운영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기금자산을 운용한다.
- (2) 거대재해발생시 국가재보험금의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자금의 적기 집행에 필요한 적정 유동성 확보를 자금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한다.
- (3) 적정 유동성 범위 이상의 자금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기금 사업 목적의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을 추구한다.
- (4)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예치이자율 입찰행위, 이면계약 행위, 실적배당 상품의 배당률 사전 약정행위 등은 금지한다.
- (5) 기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되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따라 내부 직접투자 및 외부 간접투자 등을 통하여 운용한다.

4. 자산운용체계

4.1 의사결정구조



4.2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

(1)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거래대상 금융기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위촉하는 내·외부전문가 5인(위원장포함)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위험관리 · 성과평가위원회

위험관리 ·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자산운용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위험관리·성과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는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위촉하는 내부 2인, 외부 3인(위원장포함)으로 구성하며,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내 위험관리 분과위원회와 성과평가 분과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자산운용 담당(부서)

자산운용 담당(부서)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연간 자산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위탁운용사 선정기준 등에 의거하여 거래대상 금융기관과 투자상품을 선정하는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위험관리·성과평가 담당(부서)

위험관리·성과평가 담당(부서)은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 위험을 측정·분석·평가하고, 투자의사결정 과정별 성과를 평가하는 등 위험 관리·성과평가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5. 자금수지 분석 및 계획

5.1 운용자금의 분류

운용자금은 운용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단기자금과 1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장기자금으로 분류한다.

단기자금	현금성자금	■ 자금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 ■ 만기 3개월 미만의 자금
	유동성자금	■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금 ■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금
중장기자금		■ 자금운용수익 제고를 위해 1년 이상 투자가 가능한 자금 ■ 중장기자금 = 총운용자금 - 단기자금

5.2 자금수지 항목

자금의 현금흐름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하며, 수입항목은 정부출연금·재보험료 수입·이자수입 등이며, 지출항목은 재보험사업비(재보험금)·기금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5.3 적정 유동성 규모 추정

(1) 적정 유동성 규모 추정방법

1 ~ 3개월 미만 현금성 자금에 대한 적정 유동성 버퍼(Buffer)는 최근 5개년도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과거특성을 분석하고, 유동성위험 관리 신뢰 수준을 95%로 설정하여 계획 대비 실적의 순지출오차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Cashflow at Risk)을 참고하여 산출, 유동성 자금의 경우 평년(시나리오) 수준의 재해 발생 시 기금이 지급해야 하는 적정 보험금 수준을 단기 재정목표로 인식하고, 유동성 자금의 적정 유동성 버퍼(Buffer)로 설정한다.

(2) 적정 유동성 규모

(1)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적정 유동성 규모는 [표1]과 같다.

(3)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 운용규모

전년도 말잔과 당해 총 조성규모를 합산하여 총 운용규모를 도출한 뒤 당해 사업비를 차감하여 여유자금을 추정한다.

여유자금에서 적정 유동성 규모를 제외시킨 규모는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하며, 자금배분안은 [표1]과 같다.

본 기금의 경우 추정된 운용가능 자금 규모(558억원)가 단기자금 규모 (5,427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중장기 자금을 운용할 여력이 없으므로 전액 단기자금으로 운용한다.

【표1. 자금배분안】

(단위 : 백만원, %, %p)

구 ·	분	예상 운용규모(평잔)	비중
허그서	사업대기성	7,468	13.38
언급성	적정유동성	47,059	84.29
유동성	사업대기성	_	_
	적정유동성	1,305	2.34
:	소 계	55,832	100
중장:	기	_	_
합 :	계	55,832	100
	현금성 유동성 중장: 합	현금성사업대기성적정유동성유동성사업대기성적정유동성소 계중장기합 계	현금성사업대기성7,468적정유동성47,059유동성사업대기성-적정유동성1,305소 계55,832중장기-

^{*} 단, 거대재해 발생 및 재보험금 지급일정에 따라 허용범위 외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6.1 목표수익률

본 기금은 전체 목표수익률의 개념을 "기금의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목표치로서 자산배분을 통해 달성해야할 요구수익률"로 정의한다. 기금의 목적사업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거대재해가 발생할때 필요한 국가 재보험금(2조 1,6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적립요구수익률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5년간 정부출연금을 연평균1,256억원 수령 감안 시 연 48.5% 수준이다.

이는 현 기금운용 추정 평잔이 558억원으로 전액 단기자금으로만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수익률임을 감안 및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고려하여 기금의 대표자산(현금성)의 기대수익률을 목표수익률로 설정한다.

구분	구분 목표수익률		
기금 전체	기금 대표자산(현금성)의 기대수익률	0.59%	

* 기대수익률: 예상 기준금리와 최근 5개년 스프레드를 고려한 전망치(forward Hooking) 방식으로 추정

6.2 허용위험한도

본 기금의 허용위험한도는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 등)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자금지출 추정시기에 따라 만기 Matching하여 가능한 미래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확정금리상품에 우선 투자하여 국가재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기금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단기자금은 연간 누적수익률이 'MMDA평균 금리'를 초과하지 못할 확률을 0.5%이하(향후 1년 동안의 Shortfall Risk(MMDA평균금리) \leq 0.5%), 중장기자금은 1년 누적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확률을 2.0% 이하(향후 1년 동안의 Shortfall Risk(원금) \leq 2.0%)로 통제하는 자산배분안을 선택한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일간 최대허용손실규모는 최근 3년간의 벤치마크의 수익률의 연간%VaR값(신뢰수준 95%)으로 산출하고, 실적형 상품(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최대 허용범위까지 확대된다고 가정 시 유형별 %VaR(신뢰수준 95%)를 VaR허용한도로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7. 자산배분

7.1 투자대상 자산군 및 투자제한 사항

본 기금의 투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와 같다.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치
-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원활한 재보험금 지급을 위해 투자원금 손실발생 가능성이 큰 주식· 채권·파생상품에의 직접투자는 제한(위험해지거래 및 원금보장형은 제외) 함으로써 안정성·유동성을 확보한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위탁운용은 연기금투자풀을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주요 투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투자대상 자산군			
다기지그	현금성	MMDA, MMF, RP, CD, CP 등			
단기자금	유동성	정기예금,	정기예금, 채권매입, 채권형 간접투자기구 등		
장기 자금 (1년 이상)		예금	장기 정기예금 등		
		채권	국고채, 은행채, 특수채, 회사채, 채권형 간접투자기구 등		
		대체 투자	부동산펀드, Commodity, ELS, ELF 등 간접투자기구		

^{*} 현금성은 3월 미만, 유동성은 3월~1년 기준으로 함

7.2 자산배분 원칙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자산배분을 실행하되, 자금소요시기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익성 제고 및 운용상품의 다양화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자산배분전략을 추구한다.

7.3 벤치마크지수

벤치마크지수는 전체 운용자산과 개별 운용자산군의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기준수익률 계산을 위해 운용자산군별로 사전에 설정된 지수나지표로써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자산별 벤치마크지수】

구 분			벤치마크지수 ^{ㄲ기준수익률}	
현금성(3개월미만)			- MMF 평균수익률	
유동성 (3개월이상 [~] 1년미만)	확정금리형		- 3개월이상~6개월미만 : 정기예금 6개월미만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정기예금 6개월~1년미만	
	단기실적 채권형		- 국공채지수(3개월 이상~1년 미만)×국공채투자비율+회사채 지수(3개월 이상~1년 미만)×(1-국공채투자비율)	
	확정금리형		- 1년이상~2년미만 : 정기예금1~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정기예금2~3년미만	
중장기	국내채권 투자	간접투자 (채권형), 직접투자	- 국공채지수(1년 이상~2년 미만)×국공채투자비율+회사채 지수(1년 이상~2년 미만)×(1-국공채투자비율)	
(1년이상)	혼합형펀드 (국내 채권·주식)		- 국공채지수(1년~2년)×(1-주식투자비율) + KOSPI × 주식투자	
	국내주식 투자	간접투자 (주식형)	- KOSPI × 주식투자비율 + 콜금리지수(1-주식투자비율)	
		직접투자	- KOSPI	

[※] 정기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고시 평균금리, 채권형지수는 매경BP종합, KAP채권지수, KIS종합채권지수 등 사용가능함

7.4 자산 배분

본 기금은 거대재해로 인한 국가재보험금 지급을 대비하는 기금의 특성에 따라 전체 운용가능자금이 1년 이내의 단기자금으로 배분되는 바, 중장기자금의 최소요구수익률 및 자산배분비중의 산출이 불가능하여 2021년도는 아래와

¹⁾ 기준수익률은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지수의 사후실현수익률을 말함

같이 자산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허용범위(Range) 내에서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021년도 자산배분안】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목표비중	금액(평잔)	허용범위*
	현금성		97.66	54,528	-13.37,
					+2.34
		확정금리형(정기예금)	2.34	1,305	-2.34,
단기					+13.37
자금	유동성	3M~12M 국공채	_	_	_
		3M~12M 회사채	_	_	_
	소 계		100	55,832	_
중장기자금			_	_	_
합 계			100	55,832	_

^{*} 거대재해 이외의 통상 재해수준을 감안 시 단기자금의 투자비중은 상기와 같이 조정가능 (단, 거대재해 발생 시에는 상기 허용범위 외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7.5 만기도래 상품의 재투자 기준

(1) 투자 워칙

예치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때에는 만기시점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재 추정하여 자산배분을 실시하고, 재투자가 가능할 경우는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융기관 평가기준에 따른 거래대상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 기금의 투자상품 선택기준

투자상품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만기구조, 금융기관 신용등급 및 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단기자산은 유동성을 우선 고려하여 환매가능성, 중도해지수수료, 3개월 평균거래량 등을 비교하고, 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평가 등급은 B등급 이상으로 한다.

또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제시 상위금리 순으로 개별 예치 한도 내 분산투자하도록 한다.

중장기자산은 자산배분안, 만기구조, 금융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실적배당형 투자상품 또는 확정금리형 투자상품 유형을 선택하고 상품선정기준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중장기자산은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되, 환매가능성·중도해지수수료·평균 거래규모를 통해 유동성을 판단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은 단기자산의 선정 기준에 준한다.

동일유형내 실적배당형상품의 선정기준은 펀드매니저의 경력, 과거실적에 대한 상대평가, 위험관리능력, 수수료, 중도환매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기금이 연기금투자풀의 상품을 활용하는 경우, 연기금투자풀은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금융상품 선정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금이 투자한 연기금투자풀의 금융투자상품은 연기금투자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의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3) 만기 도래 투자상품의 재투자 기준

단기자금의 만기도래액은 분기별 및 월별자금수지 계획에 따라 만기도래 시기와 규모를 판단하여 현금성 자금으로 재보험금지급을 최우선 대비하고, 잉여액은 해당 분기의 적정 유동성 규모를 판단하여 안정성, 수익성과 예치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재투자 운용한다. 다만, 안정성이 확정 금리형 상품에 준하고 수익성이 높은 단기 실적배당형 또는 매칭형 상품이 있는 경우 확정금리형 상품에 우선하여 재투자할 수 있다.

중장기자금의 만기도래액은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투자상품의 자산 배분비중,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만기구조 등을 고려하여 주식에 준하는 위험상품인 경우 기금내 주식, 채권의 직접투자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전까지 연기금투자풀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4) 만기 전 투자상품 매도/환매 기준

운용중인 투자상품은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발행기관의 신용도 하락,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 등의 외부적 요인과 거대재해의 발생 등으로 국가 재보험금 지급규모의 예상치 못한 증가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여 전체 운용자금 또는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내부적 요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 매도 또는 환매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내부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매도/환매의 순서는 현금성, 유동성 자산을 우선하고, 중장기 자금은 만기가 짧은 상품, 손실이 적은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매도/환매한다. 다만,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매도할 수 있다.

8. 위험관리

8.1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관리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은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재보험금의 지급이 불가하게 되거나, 자산운용과정에서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하거나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한다.

본 기금의 자산운용은 자금의 수입·지출규모를 예측하여 국가재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예측하지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성자산에 적정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유동성 위험관리에 임한다.

8.2 신용위험(Credit Risk) 관리

신용위험(Credit Risk)은 거래의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저하에 따라 약속한 원리금을 지불하지 못할 위험으로, 금융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default loss)과 기관자체 및 채권, 기업어음 등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손실(devaluation loss)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사건 발생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내부의 거래대상 금융기관 선정 기준을 준수하고, 유가증권(채권, CP 등)에 대한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정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위험 관리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8.3 시장위험(Market Risk) 관리

시장위험(Market Risk)은 금리·주가·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다.

시장위험은 통계적으로 산출된 연간 %VaR값으로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며, 보유 자산의 허용위험한도를 초과시 별도의 위기상황매뉴얼을 통해 관리한다.

8.4 운영위험(Operation Risk) 관리

운영위험(Operation Risk)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적절한 내부통제제도, 전산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 비재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을 의미한다.

운영위험 관리방안으로 기금집행을 재무관과 지출관이 업무를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이에 대한 교육 실시,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을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등으로 운영위험을 통제·관리한다.

8.5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자산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담당(부서)과 별도로 위험관리· 성과평가 담당(부서)을 분리할 수 있다.

본 기금의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회 내에 위험관리 분과위원회와 성과평가 분과위원회를 둔다.

8.6 위험관리방안 및 위기상황 대응절차

위험관리는 필요시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을 실시하며, 도출된 결과의 활용 및 대처방안 수립 등 세부사항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기준"과 별도의 "위기상황 매뉴얼"을 준수하여 대응한다.

위험관리 담당(부서)은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매 반기마다 위험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수시 보고한다.

9.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9.1 내부운용과 외부운용 정책

본 기금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리·운영하되, 기금자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확정금리형 상품에 투자하여 직접운용(내부 운용)하거나 MMF·채권형·혼합형 등의 상품에 투자하여 위탁운용(외부운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2 외부 자산운용기관 선정대상

외부 자산운용사는 연기금투자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을 그 대상을 한다.

9.3 외부 자산운용기관 선정기준

- (1) 거래대상 금융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및 투자의 다양화를 통한 자금운용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금융권과 제2금융 권으로 구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2) 제1금융권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 총자산규모순위,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산이익률, 국내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이상 선정한다.
- (3) 제2금융권 중 판매사(증권사)는 재무건전성, 시장지배력, 운용성과,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운용

회사(투신사)는 재무건전성, 운용조직 및 전문인력, 운용성과, 투자 및 리서치 프로세스,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부문으로 평가하되, 연기금투자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하여 선정한 자산운용사들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한다.

- (4) 제1, 2금융기관의 평가 및 선정기준과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사 자금 배분기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정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산운용기준"에 따른다.
- (5) 외부 자산운용기관 선정 시 수익률 보장 등과 같은 이면합의를 금지한다.

10. 성과평가

10.1 성과평가 원칙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는 연간단위로 실시하며, 투자자산군별로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여 이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자산운용성과는 원칙적으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하되, 운용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또는 평가목적에 따라 실제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평잔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다.

10.2 기준수익률

기준수익률은 각 투자자산의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 운용대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만기와 위험을 가진 벤치마크지수의 사후 실현수익률이며, 전체 자금의 기준수익률은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에 그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기준수익률 = \sum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투자자산별 투자비중)

10.3 성과평가 결과보고

성과평가는 분기·반기·연간으로 실시하며 기준수익률과의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운용체계와 리스크 관리의 개선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성과평가는 자산운용 담당(부서)과 분리된 성과평가 담당(부서)에 의해 수행하며, 연 초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운용결과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자산배분 및 운용전략 수립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10.4 보상정책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상정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정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다.

11. 감사 및 공시

11.1 감 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감사원 감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및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이행상황 및 계획과의 부합 여부
- ·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등
- ·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2 공 시

기금의 운용내역과 성과에 대해서는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 이지(www.apfs.kr)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공시내용 : 기금의 일반현황,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평가결과 등

12.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기금의 모든 자산운용담당자(이하 "직원")는 기금 자산의 수탁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직원은 관계법령, 기금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기금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직원은 투자를 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 (3) 직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리입찰, 수수료덤핑 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직원은 투자 및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 (5) 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직원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